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12. 12. 3		
이사정수	5~10	재적이사	5

1. 일 시 : 2012. 12. 13 (목) 17:00

2.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5-1번지 2층 회의실

3. 참석

구분	참석인원	참석자	불참
이사	4명	조환길, 하성호, 장효원, 이정효	김정호



4. 회의 안건:
- 이사 2명(배임표, 박승재) 추가 선임의 건
 - 정관변경의 건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201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및 확정
 -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및 확정

5. 회의 내용 및 의결사항

대표이사 조환길 대주교는 정관 규정에 의한 성원을 확인한 후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안1호) 이사 2명(배임표, 박승재) 추가 선임의 건

대표이사는 바쁘신 중에도 참석한 이사들의 노고를 치하한 후 상임이사인 이정효 신부에게 의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1월 27일부터 이사의 정수를 최소 7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재 우리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 정수가 '5인 이상 10인 이하'인데 현재 재적이사가 5명이므로 법인업무 심의에 적정한 수를 고려하여 2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의 원장인 배임표 신부와 현재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인 박승재 신부를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임기를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로 하는 안을 제안하다.

장효원 이사가 해당되는 두 분의 이사 취임승낙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자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두 분 모두 이사 취임승낙의사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하성호 이사가 법인 산하 시설인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장이 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시설장은 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장효원 이사가 2013년부터 외부추천이사가 2명 이상 두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자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현재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포함한 5명의 재적이사의 임기만료일이 2013년 7월인데 그 때에 2명의 이사는 연임을 하지 않는 대신 외부추천이사를 받아 선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취지에 합당하겠다고 설명하다.



하성호 이사가 배임표 신부와 박승재 신부를 이사로 선임하게 된 이유를 묻자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배임표 신부는 사회복지시설인 들꽃마을 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대구광역시립희망원의 원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과 덕망이 있어 추천하였고, 박승재 신부는 아동복지시설인 한국SOS어린이마을 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포항 지역에 설치한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추천하였음을 설명하다.

대표이사는 배임표 신부와 박승재 신부 2명을 이사로 추가 선임하여 재적이사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이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끝낸 후 의안 승인 여부를 여러 이사들에게 묻자,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배임표 신부와 박승재 신부를 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그 임기를 2013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로 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의안2호) 법인 정관 변경의 건

대표이사는 상임이사인 이정효 신부에게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법인 정관정비계획을 통보받아 정관변경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설명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먼저 새도로주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새주소로 변경해야 함을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번지 내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부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포항지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52-12번지성주지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2리 198번지구미지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312번지김천지부 :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406-1번지	<p>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u>남산로4길 112 (남산동)</u> 내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부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포항지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u>새천년대로410번길 15 (대잠동)</u>성주지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u>청사도서관길 6</u>구미지부 : 경상북도 구미시 <u>수출대로36길 9-11 (인의동)</u>김천지부 : 경상북도 김천시 <u>평화순환길 204 (평화동)</u>

대표이사는 정관 제3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3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효 상임이사는 대구광역시의 정관정비계획에 따라 목적사업의 표기에 있어서 사회복지 관계법령과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관 제4조의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p>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노시설 유지 경영사업 2. 재활시설 시설유지 경영사업 3. 전 2호의 시설유지 경영에 수반되는 사업 4.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락조정 지도 5.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협력 8.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의 조정 배분 9.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타·재가노인복지사업 실시 10. 어린이집 운영사업 11.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사업 12. 의료기관 운영사업 13. 상담기관 운영사업 14. 정신보건시설 운영사업 15.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운영 사업 16. 노인복지관 및 시설운영 사업 17. 사회복지 및 여성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사업 18.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사업 19.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20.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p>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의한 결핵시설 운영사업</u> 2. <u>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u> 3.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u> 4.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락조정 및 지도 5. <u>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u> 6.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7. 국내외 사회복지 단체와의 교류협력 8.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u> 9. <u>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운영사업</u> 10. <u>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운영사업</u> 11. <u>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u> 12. <u>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사업</u> 13. <u>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업</u> 14. <u>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업</u> 15. <u>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사업</u> 16. <u>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u> 17. <u>평생교육법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u> 18. <u>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사업</u> 19. <u>아동복지법 제52조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u> 20. 그 밖에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현행 정관 제4조에서 3호, 5호, 8호는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대신 2012년 군위군으로부터 군위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법인으로 지정받았기에 제3호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우리 법인이 노인장기요양법시행에 따라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달성요양센터, 서구요양센터 등을 현행 정관의 16호 <노인복지관 및 시설운영사업>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왔으나 금번 근거법령에 근거해 목적사업을 개정함에 따라 제5호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또한 우리 법인이 달성지역자활센터와 서구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으로 지정받아 현재 운영중이나 그 근거가 되는 목적사업이 모호하여 제8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대표이사는 정관 제4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4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1월 27일부터 이사의 정수를 최소 7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5인 이상 10인 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말라는 대구광역시의 정관정비계획을 설명하고 우리 법인의 업무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이사정수를 7명으로 하는 것을 내용하는 하는 다음의 정관변경안을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u>7인</u>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대표이사는 정관 제15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15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관 제17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하는 하는 다음의 정관변경안을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대표이사는 정관 제17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17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호 상임이사 신부는 이사의 정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향후 외부추천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의 개최일을 약속함에 있어서 회의날짜를 맞추기 어렵고 특히 천주교대구 대교구의 교구장이신 조환길 대표이사께서 해외순방 및 전국 주교회의 참석 등으로 인하여 장기출장시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가 회의 불참시 상임이사가 임시의장이 되는 것과 상임이사가 기존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표현을 바꾸어 법인사무를 총괄하는 것, 그리고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안정을 기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p>제19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p>제19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u>법인 사무를</u>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u>대행하고 대표이사가 회의 불참시 임시의장이 된다.</u></p> <p>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p><u>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대표이사는 정관 제19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19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이 복잡해지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및 복지 관련 제반 법령, 근로기준법, 여성관련 법령 등의 잣은 개정으로 인해 우리 법인 산하 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의 개정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여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그동안 이사회에 상정해 왔으나, 향후 이를 일일이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p>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u>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u>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u>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u>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p>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장호원 이사가 의결사항이 조정되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제한이 없는지를 묻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민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개별법에서도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해 이사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설명하고, 이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검토되고 상정되었음을 설명하다.

대표이사는 정관 제24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24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우리 법인이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가톨릭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장사등에 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업이 명문화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관할구청의 수익사업승인을 얻어 장의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최근 알게 되어 정관 제29조 수익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변경전의 정관조문	변경후의 정관조문
<p>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잡화점 운영사업 2. 골프연습장 운영사업 3. 장의사업 운영사업 4. 부동산 임대사업 5.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6.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사업 7. 식당 및 제조식품 수탁 판매사업 <p>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p>	<p>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잡화점 운영사업 2. 골프연습장 운영사업 3. 장의사업 <u>및 장례식장업</u> 4. 부동산 임대사업 5.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6.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사업 7. 식당 및 제조식품 수탁 판매사업 <p>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p>

대표이사는 정관 제29조의 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제29조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이정호 상임이사 신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2년도에 취득한 다음의 부동산을 법인 정관의 기본재산목록에 추가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을 설명하다.

변경 구분	구분	소재지	규모(m ²)	평가가액(원)	출연자	평가가액 산출기준
취득	대지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8-5	130.6	141,000,000	매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포항시북구청장)
	대지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8-6	119.3			
	대지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8-16	126.0			
	주택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48-5외	247.10			
	대지	대구 달서구 용산동 921-7	198.5	174,000,000	매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달서구청장)
	주택	대구 달서구 용산동 921-7	356.04			
	공동 주택	대구 달서구 용산동 911 용산파크타운 102동 1002호	78.54	126,000,000	매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달서구청장)
	공동 주택	대구 달서구 파호동 89 삼성명가타운 204동 303호	84.96	110,000,000	매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달서구청장)
	공동 주택	대구 달서구 용산동 914 용산영남타운 101동 506호	84.87	118,000,000	매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달서구청장)
	공동 주택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12 성서3차보성타운 102동 405호	84.94	89,000,000	매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달서구청장)
	대지	대구 서구 비산동 200-8	195.0	76,245,000	매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서구청장)
	주택	대구 서구 비산동 200-11	54.94	10,000,000	매매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 과세표준액 (서구청장)
계(재산증가액)				844,245,000		

대표이사는 상기 부동산의 기본재산목록으로의 편입에 대한 정관변경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이사들에게 묻다.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기본재산목록의 변경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의안3호)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및 확정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준비한 추경예산안을 이사들에게 배부한 후 결산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대표이사와 참석이사들은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대표이사가 승인 여부를 여러 이사들에게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불임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의안4호)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및 확정

대표이사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이정효 상임이사 신부는 준비한 예산안을 이사들에게 배부한 후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대표이사와 참석이사들은 예산안을 심의한 후

대표이사가 승인 여부를 여러 이사들에게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함에 따라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2013년도 예산안>을 불임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고 대표이사는 18시에 폐회를 선언하였으며,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2012년 12월 13일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

대 표 이 사 조 환 길



이 사 하 성 호



이 사 장 효 원



상 임 이 사 이 정 효



■ 법인회계의 2012년 결산추경예산 및 2013년 예산 (요약)

(단위:천원)

회계구분	2012 기정예산	2012 결산추경예산	2013 예산
법인회계	3,756,900	3,979,040	2,694,661

■ 시설회계의 2012년 결산추경예산 및 2013년 예산 (요약)

(단위:천원)

대상기관명	2012 기정예산	2012 결산추경예산	2013 예산
구미종합사회복지관	1,019,539	1,011,684	901,48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79,467	463,413	566,397
구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25,731	198,167	235,301
구미재가노인 노인돌보미사업	104,838	84,894	87,785
구미재가노인 실버메신저사업	33,883	32,552	-
구미재가노인 방문요양/목욕사업	130,369	135,529	148,843
구미재가노인 장애인방문목욕사업	34,239	10,750	17,790
황상지역아동센터	134,673	135,893	144,190
김천부곡사회복지관	1,040,140	1,087,050	981,130
김천부곡아동센터	97,800	95,300	78,700
김천노인복지센터	334,630	304,707	301,600
김천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사업	180,150	157,980	158,760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1,344,923	1,343,525	1,431,945
김천시문화의집	107,814	111,637	118,330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1,226,469	1,235,767	1,122,780
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95,907	93,413	74,745
본동종합사회복지관	1,366,627	1,346,405	1,366,362
사회적기업 늘푸르미사업	395,790	371,899	295,592
마을기업 카페본	23,200	23,200	25,000
본동요양센터(주간보호)	193,961	167,347	193,074
본동요양센터(방문요양)	289,301	303,508	333,924
상인종합사회복지관	1,513,832	1,457,772	1,526,230
상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83,705	86,663	92,333
서구종합사회복지관	1,452,146	1,424,000	1,363,228
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115,762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3,543,199	3,606,420	3,662,679
포항장애인주간보호시설	133,777	135,914	130,930
포항장애인단기보호시설	192,108	192,990	188,894
포항장애인공동생활가정	73,074	73,273	111,124
카리타스장애인공동생활가정	64,075	66,070	107,508
카리타스보호작업장	1,345,145	1,315,378	1,617,585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771,485	1,735,016	1,531,757
학산보호작업장	481,846	482,954	367,192
구미지역자활센터	298,080	297,852	323,952
구미지역자활근로사업단	1,327,669	1,236,493	1,125,028
구미요양센터	68,162	62,794	52,674
김천지역자활센터	228,037	228,037	239,878
김천지역자활근로사업단	1,600,633	1,667,111	1,712,434

대상기관명	2012 기정예산	2012 결산추경예산	2013 예산
달성지역자활센터	290,900	285,900	298,537
달성지역자활근로사업단	1,278,000	1,275,000	1,667,395
달성자활 현물급여집수리	-	70,100	100,200
달성자활 전열기및배선수리	-	31,040	-
달성자활 노인돌보미사업	125,550	128,502	134,186
달성자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15,080	480,505	474,196
달성자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51,670	55,809	53,604
달성요양센터	107,470	110,764	105,886
서구지역자활센터	264,320	268,689	286,057
서구지역자활근로사업단	1,200,280	1,200,280	1,400,300
서구자활 노인돌보미사업	283,438	-	187,986
서구자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21,758	-	332,314
서구자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168,586	-	217,872
서구자활 집수리사업	-	-	30,050
서구요양센터	141,592	160,738	178,794
대구요양원	815,758	799,611	866,749
천사들의집	810,656	886,762	863,592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	638,495	592,776	762,385
카리타스남구보금자리(특별)	3,000	3,000	4,000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	116,681	81,696	427,064
카리타스달서구보금자리(특별)	60,000	30,000	120,000
성심복지의원	194,772	191,968	183,938
서구시니어클럽	1,559,717	1,539,959	1,954,344
칠곡시니어클럽	160,100	114,660	1,108,064
구미직업재활센터	597,131	521,857	532,718
대구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44,050	40,015	41,150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15,200	8,611	13,750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1,610,542	1,845,949	1,356,238
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8,684	-	281,311
구미알코올상담센터	162,227	164,232	146,570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	138,559	158,396	149,012
달서구정신보건센터	206,685	205,395	194,066
꿈나무어린이집	523,636	528,348	544,020
로사어린이집	418,283	418,765	460,527
북구어린이집	813,139	781,175	736,743
분도어린이집	450,177	462,262	474,002
사랑어린이집	573,242	567,333	552,425
상인어린이집	360,959	363,424	368,503
시립자인어린이집	448,625	451,985	497,008
시립진량어린이집	670,468	673,180	659,465
큰별어린이집	388,053	390,949	392,630
황상어린이집	255,118	289,817	256,470
효성어린이집	429,792	452,922	468,956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255,933	-	260,076